

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57호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년 4월 20일
발의자 : 임준희 의원
찬성자 : 정택진, 김수진, 옥동준,
이재웅, 신우정, 최혜숙,
곽고은, 윤인숙 의원(8명)

1. 제정이유

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양천구와 구민 상호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정의와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함
- 나.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14,600천원
- 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 기타 의견 없음
- 라. 기타
 - 1) 개정안 : 별첨
 - 2) 조례안예고 : 2023. 4.25. ~ 2023. 4.30.

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)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스(이하 “서포터스”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서포터스는 40명 이내로 구성하고,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, 활동우수자에 한하여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④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
1. 기사의 취재·작성

2. 콘텐츠의 공유·전파

3. 그 밖에 구정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활동

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

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
 2.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 3.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 4. 그 밖에 서포터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⑥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⑦ 구청장은 서포터스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, 간담회, 기타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고료, 제작비 등 서포터스가 취재 및 제작한 게시물에 대한 실비를 포함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<u>제6조(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)</u>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<u>소셜미디어 서포터스</u> (이하 “서포터스”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서포터스는 40명 이내로 구성하고,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, <u>활동우수자에 한하여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기사의 취재·작성</u> 2. <u>콘텐츠의 공유·전파</u> 3. <u>그 밖에 구정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활동</u> <p>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</u>

는 경우

2.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

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
3.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

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
4. 그 밖에 서포터스 활동이 어렵

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⑥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

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

니한다.

⑦ 구청장은 서포터스의 전문적이

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

위에서 교육, 간담회, 기타 활동비

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

고료, 제작비 등 서포터스가 취재

및 제작한 게시물에 대한 실비를

포함한다.

제6조、제7조 (생략)

제7조、제8조 (현행 제6조 및 제7

조와 같음)